

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2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2. 12

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2. 12

(제119회 화순군 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조 규 문

나. 제안사유

○ 일부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기관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제3조 제2항 제9호 “한국통신 화순전화국장”을 “KT 화순지점장”으로, 제11호 “화순군 농지개량조합장”을 “농업기반공사 화순지사장”으로, 제13호 “화순군 임업협동조합장”을 “화순군 산림조합장”으로 개정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현범)

○ 별다른 의견 없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7. 첨 부 :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공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공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3조 제2항중 “한국통신 화순전화국장”을 “KT 화순지점장”으로 하고, “화순군 농지개량조합장”을 “농업기반공사 화순지사장”으로 하며, “화순군 임업협동조합장”을 “화순군 산림조합장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4항중 “계장급 공무원”을 “7급이상 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 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(생략)</p> <p>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</p> <p>①~⑧ (생략)</p> <p>9. 한국통신 화순전화국장</p> <p>10. (생략)</p> <p>11. 화순군 농지개발조합장</p> <p>12. (생략)</p> <p>13. 화순군 임업협동조합장</p> <p>14 (생략)</p>	<p>제3조 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</p> <p>①~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KT 화순지점장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농업기반공사 화순지사장</p> <p>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화순군 산림조합장</p> <p>14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읍·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①~③ (생략)</p> <p>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한 계장급 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·단체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.</p>	<p>제5조(읍·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 - - - - 7급이상 공무원 - - - - -</p>